

2.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

건설교통부령 제211호 1999. 9. 29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1999. 2. 8, 법률 제5908호)되어 주택자재생산업의 등록제도, 주택자재의 품질검사제도, 우량주택자재의 인정제도 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주택단지안의 도로의 보도를 종전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의 차도면보다 10센티미터 이상 높게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차도와 보도사이에 화단, 짧은 기둥 등의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보도와 차도간의 높이를 같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단지형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42조·제45조제1항제1호 및 제45조의2제1항”을 “제45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단지안

의 도로의 차도는 아스팔트·콘크리트·석재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포장하여야 하며, 그 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차도면보다 10센티미터 이상 높게 하거나 도로에 화단, 짧은 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 차도와 구분되도록 하되, 보도블록·석재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포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단지안의 도

로는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빗물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의2중 “영 제27조제4항”을 “영 제27조제5항”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3호중 “0.3킬로와트”를 “0.5킬로와트”로 한다.

제13조 내지 제22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22조의2 내지 제22조의4를 각각 제13조 내지 제15조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22조의2)중 “별표 7의2와”를 “별표 6파”로 한다.

제15조제1항(종전의 제22조의4제1항)중 “별지 제12호의2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동조제2항(종전의 제22조의4제2항)중 “별지 제12호의3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22조의4제3항)중 “별지 제12호의4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22조의4제4항)중 “별지 제12호의5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23조 내지 제27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4호의 2. 생활편익을 위한 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생활 편익을 위한 시설	· 약국	1개소 이상	2개소 이상	
	· 근린생활시설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다.		

별표 1 제4호의 3. 체육을 위한 시설란의 운동장등란중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다.”를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다. 다만,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2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로 한다.

별표 1 제5호의 2. 주민소득을 위한 시설란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동호의 3. 생활편익을 위한 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생활 편익을 위한 시설	· 약국	1개소 이상	2개소 이상	· 5천세대 이상의 단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설치계획에 따라 병원부지를 확보한다.
	· 근린생활시설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다.		

별표 1 제5호의 4. 체육을 위한 시설란의 운동장등란중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다.”를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다. 다만,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2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로 한다.

별표 6, 별표 6의2 및 별표 7을 각각 삭제하고, 별표 7의2의 제목중 “(제22조의2관련)”을 “(제13조관련)”으로 하여 동표를 별표 6으로 한다.

별표 8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삭제하고, 별지 제12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12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내지 별지 제15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종전의 별지 제12호의2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종전의 별지 제12호의4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란중 “주택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각각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종전의 별지 제12호의4서식) 앞면중 “제22조의4제3항”을 “제15조제3

항”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택단지안의 도로의 건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건설사업 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전기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대지조성사업 계획부터 이를 적용한다

주택회보